

더 나은 경북 도민을 위한 열린 의회

경상북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안



경 상 북 도 의 회
(권광택 의원 외 25명)

경상북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안

(권광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93
----------	-----

발의연월일: 2024. 1. 15.

발 의 자: 권광택 · 정한석 · 박순범
윤승오 · 남영숙 · 연규식
정근수 · 한창화 · 최태림
이춘우 · 박용선 · 김대일
이선희 · 이동엽 · 최덕규
조용진 · 윤종호 · 최병근
손희권 · 박선하 · 백순창
김창혁 · 배진석 · 정경민
박채아 · 황두영 의원
(26명)

1. 제안이유

현재 경상북도는 22개 시·군 중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15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경북지역의 2/3 이상이 인구 감소지역인 상황으로 지역소멸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러한 경북의 지역 소멸 위기는 지역의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 불균형을 초래하며 경북교육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음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인구감소 위기에 놓인 경상북도 지역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교육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인구감소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교육지원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나. 경상북도 내 인구감소지역의 학교를 지원 대상으로 규정함(안 제5조)
- 다.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 라.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마. 관계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3. 조례안: 붙임

4. 관계법령 발췌: 붙임

5. 관련부서 협의

- 가. 법제심사(예산입법담당관): 검토 완료
§입법정책담당관-2217(2023. 11. 14.)
- 나. 규제심사(경상북도교육청 정책혁신과): 규제사무 없음
§경상북도교육청 정책혁신과-536(2024. 1. 15.)
- 다. 부패영향평가(경상북도교육청 감사관): 부패유발요인 없음
§경상북도교육청 정책혁신과-536(2024. 1. 15.)
- 라. 성별영향평가(경상북도교육청 학생생활과): 이상 없음
§경상북도교육청 정책혁신과-536(2024. 1. 15.)
- 마. 해당부서 의견(경상북도교육청 정책혁신과): 검토 완료
§경상북도교육청 정책혁신과-536(2024. 1. 15.)
-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6. 발의의원 서명부: 붙임

경상북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경상북도의 인구감소 위기에 놓인 지역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교육균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인구감소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교육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경상북도 내 인구감소지역의 학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제6조(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여 3년마다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학교교육과정 운영 지원사업
2. 학생 진로·체험활동 지원사업
3. 저소득가정, 다문화가정 및 북한이탈가정의 학생 지원사업
4.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사업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추진할 때 필요한 경우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7조(예산확보) ① 교육감은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은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사업별로 목적과 조건을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8조(관계기관 협조)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인구감소지역의 교육지원과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경상북도지사 및 시장·군수와 협의하거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도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속하는 시·군·구는 지역주도의 제6조에 따른 시·군·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제7조에 따른 시·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특화된 발전을 추진한다.

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에 따른 시·군·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제7조에 따른 시·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상호 간 행정구역을 넘어서 주민 서비스 제공, 지역 경제 발전 등을 위하여 연계·협력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22조(교육기반의 확충) ① 교육감은 인구감소지역 내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이하 “유치원”이라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시설·설비 및 교원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아와 학생의 교육권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인구감소지역 내 유치원 중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과 학교 중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및 그 분교를 폐교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인구감소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에도 불구하고 관할구역에 있는 유치원 및 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부금을 인구감소지역 내 유치원 및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⑤ 인구감소지역 내 학교는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교과 및 특기·적성 프로그램(초등학교의 경우 돌봄활동 위주의 프로그램을 포함한다)을 운영할 수 있고,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우선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⑥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 내 학교(「초·중등교육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립학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설립 기준과 인가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 ⑦ 교육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구감소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평생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평생교육사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1. 학습형 일자리 창출
 - 2. 고용과 복지의 연계
 - 3. 해당 지역의 현안
-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학 등의 교육시설(「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적절히 설치되고 유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⑨ ~ ⑫ 생략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11. 생략
- 12.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 13. ~ 18. 생략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인구감소지역의 지정 등) ① 법 제2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군·구 중에서 65세 이상 고령인

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인구감소율, 출생률, 인구감소의 지속성, 인구의 이동 추이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② ~ ③ 생략

□ 인구감소지역 지정 고시(행안부고시 제2021-66호)

구분	인구감소지역(89개)
부산 (총3개)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총2개)	남구, 서구
인천 (총2개)	강화군, 옹진군
경기 (총2개)	가평군, 연천군
강원 (총12개)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 (총6개)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 (총9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 (총10개)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 (총16개)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 (총16개)	고령군, 군위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 (총11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경상북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수반 요인

-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을 위한 사업 예산 필요
- 관련조문: ‘제7조(예산확보) ① 교육감은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경상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 제정 이후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종합계획 수립 예정으로 지원사업, 지원방법 등 세부사항이 결정되지 않아 비용을 산출할 수 없음

4. 작성자: 정책혁신과 행정6급 홍상준(054-805-3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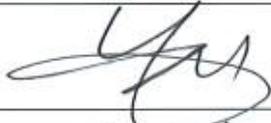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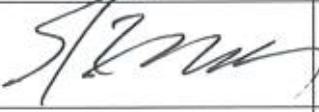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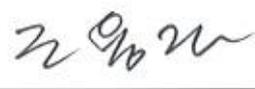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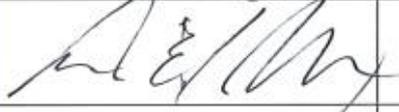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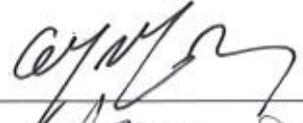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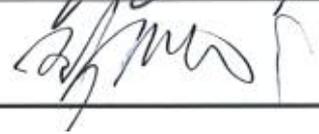
경상북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안

발의의원 서명부

의원명	서명	비고
권광택	권광택	
정한석	정한석	
박승환	박승환	
유재은	유재은	
박영숙	박영숙	
연기석	연기석	
정은수	정은수	
김태환	김태환	
최태권	최태권	
김현우	김현우	
박용진	박용진	
김미일	김미일	

경상북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안

발의의원 서명부

의원명	서명	비고
이 선희		
이 동엽		
최 석규		
조 옥진		
유 정진		
유 병숙		
손 희천		
박 선희		
백 선창		
김 창해		
배 진석		
정 정민		

경상북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안
발의의원 서명부

의원명	서명	비고
박채아		
홍우영		